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565
-----------	------

2026년 6월 17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3월 30일, 남창진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3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6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 기준은 다자녀 가구 내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 지원 및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다자녀 수에 따른 우선순위 배정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장이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유아 모집·선발 시 우선 순위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30일 남창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565호로 발의되어 2026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시 다자녀 가구 내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우선순위 배정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보장하여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국가 존립의 위기로 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총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해 왔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 지원 확대를 핵심 과제 중 하나의

주제1)로 설정하고 있음.

- 즉, 다자녀 가구의 양육 환경 개선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²⁾하고 있음.

[표-1] 중앙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³⁾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육아용품 지원	주거 지원	보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주택구입 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교육비 지원	공공요금 할인	교통 지원	세액 공제 및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금 감액 ● 도시가스 요금 감액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등 이용대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 요금 할인 ● 공항주차장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첫째아 출생 비중이 62.7%에 달하는 등⁴⁾ 다자녀 가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 3자녀 중심의 지원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3년 5월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특별시 다자녀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0.12.22.), 77p, 제5차 기본계획은 준비 중.

2) 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⑤] 다자녀 가구 혜택이 확대됩니다!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policyReferenceDetail.do?articleId=44>

- 다자녀 지원제도(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등 현금성 지원 및 임신·출산 의료비,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의 혜택의 확대), 다자녀 인정기준(3자녀→2자녀), 세액공제, 전기·가스요금 할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할인 혜택

3) 참고 -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092-113, 95p 표 발췌

4) 통계청 보도자료, 2023.2.22., 「2022년 출생, 사망 통계」 1p.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53941>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⁵⁾하여 ‘다자녀 가족’ 등 용어를 정비하고, 주거·교육·보건의료·교통·공공요금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완화된 다자녀 기준이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음.

-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표-2] 서울시교육청 다자녀 지원 정책 요약⁶⁾

구분	주요 지원 항목	지원 대상 및 기준	상세 내용
기준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 이상 (둘째 자녀가 서울 학교 재학)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
진학·입학	유치원 우선입학	2자녀 이상 가정 영유아	공·사립 유치원 입학 시 우선 순위 부여
	고등학교 일반/사회통합전형	3자녀 이상 (일부 2자녀)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 시 정원 내 선발 자격 일반고 입학시 선발 자격(2027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3자녀 이상 (2026학년도부터 시행)	첫째 자녀에게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및 둘째 자녀 이상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중학교 동일학교 배정신청이 가능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경비)	2자녀 이상 가정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2자녀 이상 가정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초·중·고)
	입학준비 물품구입비	초·중·고 신입생	입학 시 필요한 교복, 도서,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 지원

5)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12.29.)
<https://www.smc.seoul.kr/info/billRead.do?menuId=006002003&billNm=%EB%8B%A4%EC%9F%90%EB%85%80&generationNum=011&propType=&billTypeCd=1&propTypeCd=01&billNo=01388&billNum=1>

6) 출처 - 다자녀 혜택에 관한 내용 발췌 정리함

1)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3.12.22.)

2)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2025.5.15.)

3)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2025.5)

4) 보도자료 -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다자녀 배정 혜택 대폭 확대한다'(교육을 비추다, 2025.7.31.),
<https://www.kyobit.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

5) 보도자료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에 '다자녀 우선 배정' 전격 도입', (세계환경신문, 2026.1.4.)
<https://www.e-newsp.com/news/article.html?no=82813>

6)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지원센터 돌봄교실 운영방침
https://afterschool.sen.go.kr/web/elem/oper/contPageDetail.do?cont_no=EBEEC33B4D4B4EB1B1D9C4254AB5B06F

	오후돌봄	초등 1~4학년 중심	돌봄이 필요한 학생
돌봄교실	틈새(연계형)돌봄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등 고학년 중심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기존 방과후학교)에 주 1일,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 지 못하는 학생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분야별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맞도록 다자녀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3자녀 이상인 경우 형제·자매가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로의 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⁷⁾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게 하는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취학 전 유아기는 보육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시기로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특히 집중되는 단계이지만, 현재 유치원 유아 모집은 이러한 부담의 차이를 고려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자녀 가정 간에도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현행 조례에 근거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방식은 ‘다자녀 가구’를 단일한 범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가중되는 양육 부담과 교육적 기대를 입학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각에서 다자녀 가구의 유치원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유치원 입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⁸⁾되는 등 선발 기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형평성 문제를 넘어, 자녀 수에 비례하여 가중되는 양육 부담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입학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로 이해되고 있음.

7)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이하 참고

주- 근거리 배정원칙이 확립된 초등학교는 자녀 수에 상관 없이 자녀가 동일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8) 최근 사례- 송파구 장종례 의원 5분자유발언, ‘다자녀가구 유치원 우선순위 입학조건 재설계’

-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우선 모집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을 낳고 있어,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내용

<https://www.songp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983>

-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우선 배정을 배려하고 있는바, 유치원 입학 모집 시에도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지원 기준을 고려하는 것은 양육 부담이 가장 집중되는 유아기 단계에서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입학 단계에서부터 자녀 수에 따라 가중되는 양육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유치원 교육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바, 그 목적에 관하여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 조문에 관한 검토

■ 모집·선발 우선순위 규정의 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는 유치원의 원장이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집·선발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각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조문의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⁹⁾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방법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장은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9) 제11조(입학)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유아의 모집·선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유치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판단됨.
- 즉, 동 조문은 기존에 교육청 지침이나 유치원별 모집 요강에 산재해 있던 우선순위 대상을 조례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¹⁰⁾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모집·선발 우선순위의 내용에 관한 검토(안 제8조 제1호~제4호)

- 안 제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교육부 지침을 반영하여 최우선순위 대상인 ‘유치원 재학 유아’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하여 법령상으로 배려가 필요한 ‘법정저소득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음.
- 현재 교육부는 “2026학년도 유치원 모집요강(예시안)”을 통해 최우선 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유치원 유아 선발 기준(예시)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또한 이를 토대로 유치원 모집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개별 유치원은 해당 지침에 따라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모집 요강에 우선 모집 대상을 반영하고 있음.

[표-3] 교육부 2026학년도 유치원 모집요강 중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¹¹⁾

우선순위	대상	내용
최우선순위	재학중인 유아	◎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생활을 고려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배치한 유아 100% 반영 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10) - 참고로 유치원 입학 모집·선발 전형은 우선모집→일반모집→추가모집의 3단계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음.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https://www.go-firstschool.go.kr/PAMS_SS/selectHm10mGridList.do

1순위	법정 저소득층가정	<p><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5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p><국가보훈대상자 가정(근거:「국가보훈법」제3조)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4순위	기타 (유형별, 종류별 대상 구분)	<p><우선순위는 예시이며 시·도 교육청 및 유치원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취약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제1형 인슐린의존형 당뇨 등)을 갖고 있으나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 ● 쌍생아 ● 재학유아의 형제·자매 : 입학 이후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형제·자매·남매의 경우로 한정 ● 사회적 배려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3자녀 이상 지역별 여건에 따라 활용) ● 다문화 가정 ● 장애부모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표-4] 서울시교육청 유아 모집 중 우선 모집에 관한 내용¹²⁾

구분	공립/공영형 유치원	사립유치원	비고
(최우선 순위)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의무	권장	• 자격조건별 시스템을 통한 확인 가능
(4순위 이하) 기타 :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 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장 애형제·자매) 가정, 건강 취약 유아 등	권장	권장	• 연령별 모집인원 30~60% 권장(일반모집 대상 유아 유치원 입학권 보호) • 장애부모 가정 → 장애부모(장애형제·자매) 가정으로 범위 확대

- 즉, 안 제8조는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의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인바, 이는 유치원 모집·선발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동 조항에서 열거된 대상은 각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체계상 정합성도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안 제8조는 원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모집·선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제7조¹³⁾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기관이며, 「헌법」 제31조 제4항¹⁴⁾에 따른 자율적 운영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의무 부과 대신 자율성을 존중한 입법 방식으로 볼 수 있음.

12)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추진 계획 3p

13)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14)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8조의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의 의미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순서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인지, 각 호를 단순 열거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과,

안 제8조를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원장의 재량에 따라 모집대상자 지정 과정에서 다자녀 가정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결국 동 조례의 개정으로 사실상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1순위~3순위 모집 대상이 재량 사항으로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현행 유치원 운영 체계와의 정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행정관리담당관-4384, 2026. 4. 7.)

- 그러나, 안 제8조가 임의규정으로 규정된 것은 단순히 사립유치원의 자율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조례와 교육청 지침 간의 규범적 역할 분담을 전제한 입법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음.

조례는 상위 규범으로서 우선 모집 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의무 부과 여부는 교육청 지침을 통해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규범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안 제8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선발 계획을 통해 공립·공영형 유치원에 대하여 최우선순위 및 1~3순위 대상자의 입학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현행 운용 방식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례가 부여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 교육청이 지침을 통해 정책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적법한 행정 운용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8조가 부여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 지침

을 통해 공립·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의무적 적용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자율적 적용을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조례의 규범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 제도 운용으로서 법체계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제5호(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검토

○ 안 제8조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정 우선순위 외에 원장이 유아모집·선발요강으로 정할 수 있는 추가적 우선순위 대상을 각 목으로 열거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건강 취약 유아,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족, 장애 부모·형제·자매를 둔 유아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안 제8조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과 달리 현장에서 공·사립 유치원 원장에게 원아 모집·선발 기준 설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유치원별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입법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한편, 안 제8조 제5호 마목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산정 시 태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자녀 수에 태아를 포함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의 유아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어린이집 입소 기준에서도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를 다자녀 가구에 포함하여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고 있음.¹⁵⁾
- 그러나 안 제8조제5호 마목은 원장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적용이 전적으로 개별 유치원의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해 동일하게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2자녀 가정과 3자녀 이상 가정 간 자녀수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 부여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유치원 운영상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일부 유치원이 다자녀 관련 기준 자체를 모집 요강에 반영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오히려 2자녀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나아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차등적 우대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안 제8조 제5호 마목은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전반에 대한 일관된 우선순위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른 추가적 차등은 의무가 아닌 선택적 요소로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적용상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8조는 우선순위 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출생·고령화, 가족 구조 다변화 등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신속하

15)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4>

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유아 모집·선발에 우선순위 지정 시 유치원 원장의 재량을 허용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둔다” 를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8조제5호마목).
- 유치원 모집·선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신설함(안 제8조제6호).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65
----------	------------

제안연월일 : 2026년 6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우선순위를 규정함에 있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자녀의 수에 따른 차등적 배정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유치원의 교육여건, 정원규모 등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 그리고 교육감이 유아 모집에 관한 정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제도운영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둔다” 를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8조제5호마목 후단)
- 유아 모집·선발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규정함(안 제8조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5호마목 후단 중 “둔다” 를 “둘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 모집·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8조(모집·선발 우선순위) 원장은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5. 그 밖에 원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아모집·선발요강으로 정하는 사항</p> <p>가. ~ 라. (생 략)</p> <p>마.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자녀 수에 태아를 포함하고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둔다.</p> <p>바·사. (생 략)</p> <p><신 설></p>	<p>제8조(모집·선발 우선순위) -----</p> <p>-----</p> <p>-----</p> <p>-----</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p> <p>-----</p> <p>-----</p> <p>가. ~ 라. (개정안과 같음)</p> <p>마. -----</p> <p>-----, -----</p> <p>-----</p> <p>----- <u>둘 수 있다.</u></p> <p>바·사. (개정안과 같음)</p> <p>6. 그 밖에 <u>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모집·선발 우선순위) 원장은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1. 본원 재학 유아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5. 그 밖에 원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아모집·선발요강으로 정하는 사항
 - 가. 건강 취약 유아
 - 나. 쌍생아
 - 다.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마.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자녀 수에 태아를 포함하고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형제·자매를 둔 유아

6.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 모집·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